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1호 2021. 3. 26(금)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1647호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1
- 남원시 조례 제1648호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남원시 조례 제1649호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남원시 조례 제1650호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남원시 조례 제1651호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23
- 남원시 조례 제1652호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36
- 남원시 조례 제1653호 남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 39
- 남원시 조례 제1654호 남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46
- 남원시 조례 제1655호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 49
- 남원시 조례 제1656호 남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 ----- 52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1-647호 남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공고 -----79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3월 26일

남원시 조례 제 1647 호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공모사업의 적법성
 -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제약 여부
 -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 2. 사업 타당성
 -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 나. 타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 투자 사업여부
 -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 라. 사업관련 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 4. 재정 협의
 -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획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책임자로 구성한다.

③ 기획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남원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의회는 제1항에 따라 남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 「남원시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 제28조의3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3월 26일

남원시 조례 제 1648 호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 읍·면의 이·반장 정수 및 이·반의 관할구역
총괄표**

읍·면	리 수	분리수	이장정수	자연 마을수	반 수	반장정수	비 고
계	157	343	343	438	691	691	
운 봉 읍	17	33	33	37	78	78	
주 천 면	11	23	23	30	41	41	
수 지 면	6	19	19	19	31	31	
송 동 면	13	26	26	40	47	47	
주 생 면	9	17	17	31	44	44	
금 지 면	11	20	20	25	51	51	
대 강 면	13	24	24	28	46	46	
대 산 면	8	15	15	20	30	30	
사 매 면	9	20	20	22	37	37	
덕 과 면	6	15	15	23	29	29	
보 절 면	9	25	25	30	40	40	
산 동 면	7	15	15	19	45	45	
이 백 면	10	21	21	23	42	42	
인 월 면	9	26	26	28	53	53	
아 영 면	11	26	26	28	38	38	
산 내 면	8	18	18	35	39	39	

(중략)

읍면	리명	이장 정수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사매	서도	1	노봉	1	431, 553, 578, 415, 387, 425, 427, 372, 423, 386
				2	418, 409, 435, 369, 373, 411, 339, 413, 406, 579, 387, 560, 451, 414, 417, 416, 581, 509, 530, 451, 559, 527, 415, 560, 447, 414, 553, 579, 578, 558, 551, 552, 553, 577, 571
		1	수촌	1	287, 222-1, 302, 216, 222, 304, 227, 300, 306, 228, 225, 216, 233, 295, 223
				2	749, 748, 714, 740, 742, 744, 730
		1	서촌	1	122, 170, 322, 140, 96, 138-1, 137, 127, 168
				2	541, 530, 354, 387, 386, 357, 356, 382, 258, 360, 353, 543-2, 361~863, 366, 365, 544, 542-2, 595, 583
	계수	1	수동	1	516-1,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7
		1	계동	1	99, 100, 102, 104, 106, 107, 112, 114~116, 119, 191-2, 120, 121, 123, 126, 133, 134, 136, 152, 199-2, 202, 203, 208, 210, 211, 212, 213, 216, 261, 269
	인화	1	인화	1	259, 241, 257, 235, 303, 231, 225, 239, 216~228, 100, 221, 217, 214, 210, 253, 243, 234, 227, 38, 350-3, 209, 211, 212, 218, 310-8, 219, 222
				2	266, 267, 269, 277, 278, 251, 258, 255, 300, 254, 259, 260, 263, 287, 314, 487-2, 286, 200, 285, 229, 281, 284, 289, 310, 294, 296, 301~304, 308, 290, 310-10, 310-11, 312
				3	322-1, 326, 324, 309, 331, 330, 334, 294-4, 325, 339, 340-2, 341-1, 424, 414, 310-1, 411-1~2 412, 487, 485, 484, 480, 499, 483, 485, 502
	화정	1	화정	1	41, 280, 282, 284, 233, 188, 279, 102, 285, 85, 226, 109, 271, 269, 268, 267, 270, 262, 261
				2	182-1, 254, 301, 247-1, 252, 246, 245, 200, 249, 185, 239, 193, 84, 183, 182, 87
				3	30, 34, 131, 251, 179, 182, 185, 185-1, 187, 189, 190, 191, 193, 194, 195, 196, 197, 197-1 222, 226, 227, 228, 230, 242, 245, 245-1, 251, 253, 254, 270, 284, 327
	대율	1	대율	1	87, 344, 558, 561, 563~569, 593, 694, 603, 605, 612, 611, 615~618, 660
				2	117, 131, 307, 736, 245, 347, 357, 375, 380, 382, 388, 412~414, 416-1, 418, 420, 422, 424

				3	30, 168, 320, 335, 452, 454, 457-1, 460, 464, 466, 468, 469, 517, 573, 574, 575, 577, 579, 580, 521
				4	111-2, 142, 380, 421, 605, 714, 584, 391, 629, 426, 427, 433, 439, 441, 442, 476, 626, 627, 611, 614~616, 618, 375, 626, 627, 442, 445, 446, 448, 449, 454, 476, 436, 278, 259, 482
월평	1	손울	1	산2, 산14, 산15, 289-97, 291, 292, 323-1, 387, 558, 563, 569, 612-1, 622, 624, 627, 629, 632, 651, 653, 655-2, 656-1, 657-1, 658-1, 658-2, 994-1 산38, 334, 342, 343-1, 710-2, 732-1, 737, 742-1, 747, 748-1, 755-1, 756-1, 763, 768,	
	1	수월	1	334, 342, 343-1 , 594-1, 596, 598, 609-1, 610-1, 611-1, 659, 660, 661, 664, 667, 668, 672~674, 675, 677, 676, 678-1, 679, 680, 682~683, 684-1, 685-1, 710-2, 732-1, 737, 742-1, 747, 748-1, 755-1, 756-1, 763, 768, 813, 817-1, 863, 865-1, 893 558, 563, 569, 572, 612-1, 622, 624, 627, 629, 632, 651, 653, 655-2, 656-1, 657-1, 658-1, 658-2,	
	1	덕평	1	143, 147, 149, 150-1, 150, 150-2, 152, 154, 166, 158, 160, 164, 156, 174, 572, 653, 산17	
			2	산38, 산98, 108-2, 147, 146, 148, 154 157, 160, 168-1, 167-2, 170, 171, 134, 178, 522, 637, 685, 695	
오신	1	하신	1	626, 610, 623, 611-1, 606-14, 612, 614, 579, 660, 614, 614-5, 362, 615	
			2	613, 599, 43, 635, 695, 595, 693, 594, 592, 649, 651, 654-2, 654, 626-1, 656	
			3	660, 658, 210, 614, 638, 661, 662, 655, 644, 645, 657, 57, 615, 661, 57, 627, 614, 569, 52, 637, 203, 642, 636, 634-2, 635, 618, 537-1, 631, 657, 659, 620	
	1	중신	1	산23, 51, 61-1, 62, 190, 186, 298-1, 252, 254, 255-7, 492, 493, 511, 515, 516	
			2	517, 520, 521, 522, 525~527, 528, 528-1, 530, 613, 620, 136, 199-1, 201, 202-1, 202-2, 263, 137, 136, 203, 204, 199, 208, 211, 272	
	1	신촌	1	364-2, 373, 377, 354, 376, 50, 255, 673, 342, 374, 368, 387, 340, 364, 364-1, 351, 351-1, 340, 395, 233, 364-1, 65, 349, 375, 355, 350, 367	
			2	350, 376-1, 349, 344, 343, 340, 366, 263, 265, 267-1, 264, 349, 267, 261, 270	
	1	오현	1	50-1, 51, 52-1, 53, 54, 55, 56, 57-1, 58-2, 61-1, 69, 71-1	
관풍	1	풍촌	1	335, 330, 333, 332, 217, 348, 336, 341, 556-1, 340, 520, 351, 361, 325, 335, 345, 344	
			2	104, 188, 204, 212, 214, 215, 216, 217, 219, 222, 230, 232, 240, 248, 311, 321, 325, 327-1, 328, 328-1, 329, 333, 333-3, 334, 335, 336, 337,	

					337, 338, 341, 342, 350, 352, 354, 547, 548, 550, 551, 556
		1	관촌	1	106-1,108-1,109-1,109-2,109-3,110-1,111-1,117-1, 117-4
		1	세동	1	757-1, 757-4, 755, 754, 758-1, 759, 760, 761-1
	대신	1	상신	1	72, 71, 74, 75, 76, 95, 155, 152, 183, 179, 156-3, 166, 158, 86, 498, 661, 79
				2	178, 184, 183, 188, 산2, 129, 75, 139, 59, 60, 61, 60-1, 63, 55, 128, 121, 48, 85, 180, 135, 151, 138, 53, 149, 150, 128, 125, 183-1, 123-1, 123, 142, 131, 141, 94, 119, 191, 90, 86, 86-1, 86-2
		1	대산	1	45, 66, 95, 150, 413, 414, 415, 416, 418, 437, 446, 452, 453, 454, 455, 456, 455-1, 457, 463, 470, 471, 474, 487, 490, 491, 493, 497, 500
소계	9	20	20	37	

(중략)

읍면	리명	이장 정수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보절	서치	1	부흥	1	200-1~676-12
		1	서당	1	43~469
	괴양	1	개신	1	498~20
		1	양촌	1	229~404
				2	405~480-2
		1	음촌	1	98~187
	진기	1	진목	1	123~868, 산244, 산245, 1640~1664
				2	868-8~969-1
				3	972~1010-1
				4	1011~1392-127
		1	내동	1	354~437
		1	신기	1	481~561
	금다	1	금계	1	217~369
		1	다산	1	10-3~41-4, 86~88, 산65-6, 산65-7, 681-3~681-5, 681-10~681-13, 681-16, 681-19~681-21, 681-23~681-25, 681-32, 681-38~681-47 540-1~681-2, 681-6~681-9, 681-14, 681-15, 681-17, 681-18, 681-22, 681-26~681-31, 681-33~681-37, 681-48~914
				2	83-3~83-5, 133~148-27
	신파	1	하신	1	575~882
				2	882-1~930-5
		1	상신	1	603~641-1
				2	827-9~905-3
		1	파동	1	503~735-6
		1	중신	1	277~326-1
				2	83~226-107
	황벌	1	은천	1	62~185
				2	185-2~732-1
		1	벌촌	1	63~341-1
				2	342~387
				3	389-1~450-1
		1	외항	1	422~679
		1	내항	1	731~862
	도룡	1	도촌	1	89~535-4
				2	538-1~698
		1	안평	1	107~186
	사촌	1	사촌	1	59-1~366
				2	368~408
				3	410~499
				4	502~692
	성시	1	성남	1	457-7~960-8
		1	성북	1	400~907
		1	계월	1	114-1~276-3
소계	9	25	25	40	

(중략)

인월	사무	1	사무	1	561 ~ 605
				2	608 ~ 620
				3	855 ~ 989
		1	계암	1	59, 61 ~ 67, 72, 115, 320 ~ 413
				2	420 ~ 524
		1	사창 → 황이	1	231, 247 ~ 263
		1	신촌	1	621-3 ~ 621-7, 621-9 ~ 621-13, 621-17, 623-2 ~ 623-8, 624-1, 624-9 ~ 624-11, 625-1, 625-2, 625-5, 625-7, 625-8, 626-3, 626-5, 626-6, 626-8, 627-1
				2	725-3 ~ 725-5, 725-11, 726, 737-2, 737-4, 737-8 ~ 737-10, 737-12 ~ 737-14, 738-4, 738-7, 738-9 ~ 738-11, 738-13, 738-14, 739-3, 740-1, 741-1 ~ 741-3, 743, 744, 744-1, 772-3
				3	628-3, 632-6, 632-8, 636-3, 696-4, 698-3 ~ 698-6, 699-3, 700-1, 701-3, 702-3, 702-6, 704-3, 731-1, 731-11, 732, 733, 733-6, 734, 734-3, 734-5, 735, 735-5 ~ 735-11, 736-2, 736-11, 736-13, 736-16, 736-28, 736-30, 736-33
		1	동현	1	634-1, 635-1, 639-1, 641-1, 641-4, 645-7, 671-2, 678-2, 680-2, 681-1, 682-3, 688-9, 688-10, 688-12 ~ 688-14, 688-18, 688-36, 688-38, 688-39, 688-46, 688-52, 688-53, 688-58, 688-60, 688-64, 688-67, 688-70, 688-76, 688-78, 688-79, 688-102, 688-103, 689-2, 692, 694, 694-6, 696-5, 696-8, 696-18, 698-1, 699-1,
				2	688-54 현미아파트
				3	683, 688-1, 688-57, 688-80 ~ 688-82, 688-92
				4	688-8 동진아파트

[별표 2]

남원시 동의 통·반장 정수 및 통·반의 관할구역
총괄표

행정동	법정동수	통 수	통장정수	반 수	반장정수	비 고
계	23	160	160	751	751	
동충동	1	13	13	61	61	
죽향동	3	13	13	69	69	
노암동	3	20	20	87	87	
금동	3	23	23	114	114	
왕정동	3	14	14	63	63	
향교동	5	29	29	117	117	
도통동	5	48	48	240	240	

(중략)

동	통	통장 정수	반	관 할 구 역
향교동	9	1	1	119-120, 123-4, 123-9, 123-16, 123-19, 126-9, 126-14, 134-5
			2	123-11, 123-15, 124-4, 124-9, 124-11, 126-13, 127-3, 127-8, 134-2, 134-3, 136-5, 266-1, 269-2~3, 270-6, 270-10
			3	142, 232-2, 266-8, 267, 269-5, 274-4, 275, 276
			4	128-3~5, 130-1, 130-5, 130-7, 130-9, 130-10, 150-2, 150-3, 152, 154-3, 156, 157-1, 236, 1164 , 1165

(중략)

동	통	통장 정수	반	관 할 구 역
도통동	14	1	1	도통동 342-2, 345, 345-4, 347~349, 352, 355-9, 355-24, 355-29 , 355-42, 466-12 , 501-1~501-14, 502, 503-1~503-4
			2	500-1~500-14
			3	497-1~497-12, 499-1~499-12
			4	332, 333, 333-1~331-3, 334, 334-1, 334-2, 493, 494-1~494-6, 495-1, 496-1~496-10, 498-1~498-10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3월 26일

남원시 조례 제 1649 호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보절면 진기리 관할구역에 보절면 금다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향교동 관할구역에 도통동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제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보절면 금다리 관할구역 중 보절면 진기리에 편입한 보절면 금다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도통동 관할구역 중 향교동에 편입한 도통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제1조제7항 및 제2조제7항 관련)

○ **경계조정**

- 보절면 금다리 일부 지번 → 보절면 진기리
- 도통동 일부 지번 → 향교동

연번	변경전 행정구역				변경후 행정구역				지목	면적(m ²)	비고
	읍면동	법정리	본번	부번	읍면동	법정리	본번	부번			
	계		29필지		계		29필지			32,530	
1	보절면	금다리	산65	6	보절면	진기리	산244		임야	1,301	
2	보절면	금다리	산65	7	보절면	진기리	산245		임야	1,835	
3	보절면	금다리	681	10	보절면	진기리	1641		잡	1,424	
4	보절면	금다리	681	11	보절면	진기리	1646		전	196	
5	보절면	금다리	681	12	보절면	진기리	1647		임야	1,663	
6	보절면	금다리	681	13	보절면	진기리	1648		임야	311	
7	보절면	금다리	681	16	보절면	진기리	1659		공장용지	665	
8	보절면	금다리	681	19	보절면	진기리	1663		도로	479	
9	보절면	금다리	681	20	보절면	진기리	1661		공장용지	894	
10	보절면	금다리	681	21	보절면	진기리	1662		도로	904	
11	보절면	금다리	681	23	보절면	진기리	1660		공장용지	1,820	
12	보절면	금다리	681	24	보절면	진기리	1658		공장용지	308	
13	보절면	금다리	681	25	보절면	진기리	1657		임야	95	
14	보절면	금다리	681	3	보절면	진기리	1656		전	3,308	
15	보절면	금다리	681	32	보절면	진기리	1664		도로	356	
16	보절면	금다리	681	38	보절면	진기리	1653		도로	9	
17	보절면	금다리	681	39	보절면	진기리	1651		도로	321	
18	보절면	금다리	681	4	보절면	진기리	1649		대지	429	
19	보절면	금다리	681	40	보절면	진기리	1645		과수원	1,617	
20	보절면	금다리	681	41	보절면	진기리	1640		전	2,525	
21	보절면	금다리	681	42	보절면	진기리	1642		잡종지	1,644	

22	보절면	금다리	681	43	보절면	진기리	1650	도로	809	
23	보절면	금다리	681	44	보절면	진기리	1643	전	1,555	
24	보절면	금다리	681	45	보절면	진기리	1644	전	1,621	
25	보절면	금다리	681	46	보절면	진기리	1652	도로	192	
26	보절면	금다리	681	47	보절면	진기리	1655	임야	299	
27	보절면	금다리	681	5	보절면	진기리	1654	과수원	5,640	
28	도통동		466	12	향교동		1164	잡	215	
29	도통동		355	29	향교동		1165	잡	9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⑥ (생략) <u><신설></u>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⑦ (현행과 같음) <u>⑦ 보절면 진기리 관할구역에 보절면 금다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향교동 관할구역에 도통동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u>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⑥ (생략) <u><신설></u>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⑦ (현행과 같음) <u>⑦ 보절면 금다리 관할구역 중 보절면 진기리에 편입한 보절면 금다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도통동 관할구역 중 향교동에 편입한 도통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u>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3월 26일

남원시 조례 제 1650 호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남원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제2항 관련)

읍면별	리 명칭	관할구역
운봉읍	주촌리	주촌
	덕산리	덕산, 가장
	공안리	수철, 공안, 유평, 용은
	행정리	행정, 엄계
	산덕리	산덕, 삼산
	동천리	동상, 동하
	용산리	용산
	북천리	북천
	서천리	서상, 서남, 서하
	준향리	준향
	장교리	장교, 장동, 연동
	권포리	권포, 가동
	임리	임
	신기리	신기
	매요리	매요
	가산리	가산, 방현
	화수리	소석, 전촌, 비전, 화신
	주천면	주천리
배덕리		배촌, 덕촌
송치리		웅치, 중송, 하송
용담리		용담
호기리		호곡, 신기, 안곡
장안리		무수, 외평
은송리		행정, 내송
호경리		호경
용궁리		외용궁, 내용궁
고기리		내기, 고촌
덕치리		회덕, 노치
수지면		남창리
	초리	초리, 서당
	산정리	등동, 가정, 마연, 산촌
	유암리	유촌, 포암, 갈촌
	호곡리	외호곡, 내호곡, 신태
	고평리	양촌, 고정, 진곡, 마륜
송동면	신평리	신기, 백평
	송내리	송내
	사촌리	내사촌, 외사촌
	송상리	문치, 오촌, 원촌, 생촌
	장국리	부석, 태동, 동서내

	흑송리	안계, 척동
	송기리	우동, 부동
	장포리	장포
	영동리	영촌, 손동
	연산리	연산
	양평리	양평
	두신리	두곡, 신촌
	세천리	동양, 중상, 신산
주생면	상동리	상동, 부동
	중동리	중동
	지당리	대지, 소지, 효동
	정송리	정충, 반송
	영천리	영촌, 유매
	제천리	제천, 서만
	낙동리	낙동
	내동리	내동, 광촌
	도산리	상도, 도산
금지면	용정리	금정, 석정
	입암리	입동, 입서
	서매리	서재, 매촌
	방촌리	방촌
	택내리	택촌, 내기
	창산리	호산, 대성
	상신리	상신, 임촌
	신월리	장승, 금평, 황구
	상귀리	상귀
	귀석리	귀석
	하도리	용전, 하도
대강면	풍산리	산촌, 곡촌, 양촌
	수흥리	수촌, 도곡
	옥택리	옥전, 택촌
	평촌리	평촌
	입암리	입암
	송대리	송내, 대치
	강석리	강석
	사석리	사촌1, 사촌2, 석촌
	방동리	편동, 양동
	월탄리	월산, 금탄
	생암리	광암, 생사
	신덕리	신기, 가덕
	방산리	방산
대산면	금성리	금강, 감성
	수덕리	노촌, 노산
	대곡리	하대, 상대

	풍촌리	감동, 독산	
	신계리	신촌, 월계	
	운교리	운교	
	옥율리	옥전, 율정	
	길곡리	왓길, 심곡	
사매면	서도리	노봉, 수촌, 서촌	
	계수리	수동, 계동	
	인화리	인화	
	화정리	화정	
	대율리	대율	
	월평리	수월, 손율, 덕평	
	오신리	하신, 중신, 신촌, 오현	
	관풍리	풍촌, 관촌, 세동	
	대신리	상신, 대산	
	덕과면	만도리	만동, 도촌
		신양리	비촌, 양선, 작소
사율리		사곡, 율천	
고정리		고정, 신정, 월평	
덕촌리		덕동, 수촌	
용산리		용산, 추산, 배산	
보절면	서치리	부흥, 서당	
	괴양리	개신, 양촌, 음촌	
	진기리	진목, 내동, 신기	
	금다리	금계, 다산	
	신파리	하신, 상신, 파동, 중신	
	황별리	은천, 별촌, 외황, 내황	
	도룡리	도촌, 용평, 안평	
	사촌리	사촌	
	성시리	성남, 성북, 계월	
산동면	목동리	목동	
	식련리	식련	
	부절리	부동, 부서, 중절	
	태평리	이곡, 태평, 신평	
	대기리	대촌, 등구, 평선	
	월석리	월산, 석동	
	대상리	대상, 상신	
이백면	초촌리	오촌, 초동	
	척문리	척동, 폐문	
	서곡리	서동, 채곡, 문화	
	내동리	내동, 외동	
	남계리	계산, 남평, 산남	
	강기리	내기, 강촌	
	양가리	양강, 목가	
	평촌리	평촌	

	과립리	과리, 입촌
	효기리	효기, 효촌
인월면	중군리	중군
	인월리	구인월, 인월, 신인월, 월평
	서무리	서무, 계암, 황이(← 사창), 동현, 신촌
	취암리	취암, 동무, 덕실
	건지리	외건, 내건, 지산
	유곡리	유곡, 도장, 성내
	상우리	상우, 하우
	성산리	성산, 용주, 장평
	자래리	자래, 연실
	아영면	아곡리
봉대리		봉대
인풍리		외인, 내인, 매산
갈계리		서갈, 동갈
청계리		광평, 외지, 청계, 고인
월산리		구지, 신지, 오산
성리		상성, 하성
구상리		구상, 송리
일대리		부동, 일대
의지리		서정, 율동, 의지
두락리		두락, 이동
산내면	중황리	상황, 중황, 하황
	백일리	백일, 원백일
	대정리	중기, 대정, 매동
	장항리	장항, 원천
	입석리	입석, 삼화
	내령리	내령
	부운리	부운, 와운, 반선
덕동리	덕동, 달궁	

※ 관할구역 란의 명칭은 행정리를 말함.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3월 26일

남원시 조례 제 1651 호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 방지와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예술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을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미디어아트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직접 또는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 보수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와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립승인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조형물 건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해체)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건립승인신청은 공공조형물 제작 전 디자인 기본설계 완료 후에 한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설치되는 공공시설 등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건립부지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구조의 안전성 확보

② 상징조형물 중 동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출생지·묘소·활동지역·지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과의 긴밀성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총괄부서 담당 국장

2. 문화예술과장

3. 건축과장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문화·예술 및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조형물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 안건이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심의의 생략) 공공조형물의 건립승인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괄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디자인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2.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3. 기존 공공조형물이 설치된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4.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제14조(건립 승인 신청의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함. 이 경우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음
2. 공공조형물 관리 등의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인·허가 여부를 문서로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에 준공 신청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여부 확인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 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다.

② 시장(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등) ① 시장(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2회 상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는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심의) 승인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사망자	
	주요업적개요			

「남원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기타 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

[별지 제2호서식]

건립(이전 · 교체 · 해체) 계획서

1. 사업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작자

6. 사업비

7. 사업비 조달계획

8. 사유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사업명

사업개요

내역

항 목	세 부 계 획	비 고
1. 주관부서	가. 담당부서 나. 담당팀	
2. 조형물 등 보수계획	가. 조형물 보수 계획 나. 주변 환경 정비계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인은 상기 계획서에 따라 사후관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건립주체 :

대 표 자 :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관리번호 :

남원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설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조/재질		인물의 경우 조형 대상자	
규 격		금 액	
건설신청자		건설주체	
제작자		관리기관	
건설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조형물의 위치(배치)도		조형물의 전면사진	

[별지 제5호서식]

공공조형물 점검 내역

점검일시		점검자	부서명	
			직급	
			이름	
			연락처	
점검내용				
점검상태	■ 양호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type="text"/> ■ 불량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type="text"/>			
조치계획 (불량일 경우)				
점검사진				
앞		뒤		
우측면		좌측면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3월 26일

남원시 조례 제 1652 호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

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1. 교육업무 담당과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2. 문화예술 담당과장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6조(인문 활동 장려)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진흥 및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단체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3월 26일

남원시 조례 제 1653 호

남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남원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 계획

제4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2.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3.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4.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시민 및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외부의 에너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말한다)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 관련 부문별 시책

제6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인증제품의 사용
3.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설치,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입 시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우선구입
5.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홍보 시설을 조성·관리 할 수 있다.

제7조(산업부문)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8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에게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수송부문)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

제10조(보급지원) ① 시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요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남원시의회 동의를 구

하려고 할 때에는 동의안을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지원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른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보급사업이 완료된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제13조(설치) 시장은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 등을 자문·심의·평가·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농정국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원시의회가 추천하는 남원시의회 의원

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시민단체의 관련전문가

다.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 등을 한다.

1. 에너지 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계획
2.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시책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 및 자문
4. 에너지에 관련된 지역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5. 에너지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6. 공공·민간부문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에 관련된 사항

제17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전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관계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때
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촉을 위원장에게 신청한 때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남원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에너지시책 추진 지원 등

제21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 및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
3. 에너지전문기업 및 사업자 육성, 기술 사업화 촉진
4. 에너지빈곤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5.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

② 시장은 남원시에서 주최하는 에너지에 관한 학술회·토론회 등에 참석 또는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 교통비 등 필요경비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①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외부의 에너지 도움 없이 자체적 에너지를 자급자족 하는 마을(이하 “에너지 자립마을”이라 한다)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3조(포상)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절차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4조(백서 발간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에너지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5.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추진 현황
6. 에너지 통계

② 시장은 에너지 계획과 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백서 작성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3월 26일

남원시 조례 제 1654 호

남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 1에 규정한 동물 중에서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유실·유기 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동물복지”란 동물보호를 통한 동물 및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 갈증·배고픔·영양불량, 통증·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동행한 야외활동 시 법에 따른 관리사항을 준수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전라북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동물복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펫티켓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반려동물의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 센터를 지정하여 그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

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제9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2. 유기 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유실·유기 동물의 입양지원) ① 시장은 유실·유기 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3월 26일

남원시 조례 제 1655 호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대기질 개선 및 남원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 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의무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남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효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3월 26일

남원시 조례 제 1656 호

남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경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자문”이란 새롭게 조성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의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시장·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 ① 법 제8조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와 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 4.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내용상 불충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5.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경관구성요소(건축물·옥외광고물·공공시설물·야간경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경관계획안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알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등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청회의 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

행령에 따른다.

제9조(의견청취)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남원시의 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장 경관사업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 구조물, 공공시설물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6.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7. 그 밖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 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 계획 관련 도서
6. 사례검토 자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별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경관사업 대상지역 내 주민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 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시행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5조(경관사업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
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남원시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에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 등) ①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에 의한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경관사업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경관사업자 등에게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관사업자가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고 미지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경관협정

제18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경관협정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 공간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경관협정서 인가 및 작성 등) ①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가 그 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경관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인

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 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5.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유지관리 계획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그 밖에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①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운영규정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설립(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경관 심의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 제1호 나목, 영 제18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 총사업비는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하천시설사업

2.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광장·교량·육교 등 토목공사

3.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공원조성 및 조경공사

4.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야간경관 조성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단,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종전 규모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4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병원, 관광숙박시설,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종전 규모를 포함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단, 연면적 1/10이하의 증축은 제외)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물의 외부 형태·외장(마감재, 색채)이 50%이상 수선·변경하는 대수 선을 하는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의 규모가 제1항에 포함될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장 남원시 경관위원회

제27조(경관위원회 설치)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경관위원회 구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영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업무 주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집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하거나 집회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의결 등) ①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원안의결 :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의결 : 원안에 일부 조건이나 의견을 붙여 의결
3. 재심의의결 : 원안을 재검토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의결
4. 반려 : 관련 법규에 위반하였거나 심의 요건에 불충분한 경우

② 조건부 의결되었을 경우 조건 사항은 경관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다만, 회의 진행 시 확인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주관 부서에서 위원장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심의 위원 중에 서면으로 확인시키는 방법
2. 경관위원회 주관 부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

③ 재심의 의결된 사항을 다시 심의하는 경우 가능하면 심의 위원은 당초 위원

의 3분의2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 심의 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심의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경관위원회 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 없음” 또는 “권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경관위원회 회의록(소위원회 포함)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며 심의 위원은 회의 참석 후 심의·자문 의견서를 제출하되, 심의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록에 의한다.

⑥ 경관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소위원회) ①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준용한다.

제3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4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위원회의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⑦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⑧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5조(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제32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4. 제33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5.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관 심의 신청서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경관위원회 자문 대상) ①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관 자문 신청서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심의·자문 의제) ① 경관부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았거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2. 「건축법」 및 「남원시 건축 조례」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로 구성된 해당 위원회에 경관과 관련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관부분을 포함하여 심의·자문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심의·자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수당 등) 경관위원회(공동위원회, 소위원회 포함)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남원시 경 관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남원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 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제안자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제안 구역 개요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거주인구 및 세대수			

「경관법」 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남원시 경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 가. 제안의 개요
 -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 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경관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주체			
	소요예산			

「경관법」 제16조제2항,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남원시 경관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등)
2. 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검토 자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서식]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경관 사업(협정)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주체			
	소요예산			
사업비	구 분	금액(원)	비율(%)	
	총사업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			
	자체부담 사업비			

「경관법」 제18조제1항·제25조, 「경관법 시행령」 제17조 및 「남원시 경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경관협정 명칭				
지역명 및 위치, 범위				
경관협정운영회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	(전화:)		
유효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경관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제1항·「경관법 시행령」 제13조·「남원시 경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
6. 경관협정 관련 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 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인가필증			
명 칭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운 영 목 적			
<p>「경관법」 제21조제1항·「경관법 시행령」 제13조·「남원시 경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 인가 필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남원시장 (인)</p>			

[별지 제6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

신고 자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경관협정 명칭				
협정지역 위치				
유효 기간				
주요 협정내용				
위반시 제재사항				
협정 체결자수				
<p>「경관법」 제20조제2항·「경관법 시행령」 제12조·「남원시 경관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남원시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남원시 공고 제2021 - 647호

남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공고

남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과 관련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1. 3. 24.

남 원 시 장

1. 공청회의 개최목적

- 남원시 도시재생 변경을 위한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1. 4. 08(목) 14:00 ~ 15:00
- 장 소 :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참석 가능

Zoom 회의 참가 접속 링크

<https://zoom.us/j/99322442972?pwd=eHBEaGVBKzVwbnNKUHlqV0ppa0Fodz09>

회의 ID: 993 2244 2972 / 암호: 0408

3.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주요내용

- 목표연도 : 2031년
- 내 용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조정

4. 의견제출

- 남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과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21. 4. 09.(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남원시청 도시과 도시재생담당
 - 우편 및 방문제출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 이 메 일 : totil8301@korea.kr

5. 기타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청회에 참석하시는 경우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